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

제정 2012.5.8 개정 2015.8.12 개정 2021.12.30 개정 2022.12.29 개정 2024.1.4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가스기술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·관행·업무 절차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 옴부 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"청렴 옴부즈만" (이하 "옴부즈만" 이라 한다)이라 함은 회사가 시행하는 사업 전반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감시·평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, 불합리한 제도·관행·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2장 옴부즈만의 구성

- **제4조(구성)** ① 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,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한다. < 개정 2021.12.30, 개정 2022.12.29 >
-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.
 - 1. 가스(설비포함) 및 안전·품질분야, 회계학, 법학, 행정학, 경영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으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
 - 2. 변호사, 회계사,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
 - 3.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자
 - 4. 공기업에서 1급 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
 - 5. 국가,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
 - 6. 기타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고 공기업의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
- ③ 사장은 제2항에 따른 옴부즈만 위촉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, 옴부즈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 신설

2021.12.30 >

- ④ 사장은 부패방지 강화, 공사 청렴 수준 향상을 위한 윤리경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 신설 2021.12.30, 개정 2022.12.29 >
- ⑤ 제4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은 청렴 업무 담당 임원이 되며, 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 하는 4인 이내의 내부위원과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으로 구성된다. < 신설 2021.12.30., 개정 2022.12.29 >
- ⑥ 위원회 수행 기능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. < 신설 2021.12.30, 개정 2022.12.29, 개정 2024.1.4 >
 - 1.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시 · 평가
 - 2.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·관행·업무절차 발굴 및 개선
 - 3. 청탁금지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결정
 - 4.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처리 및 조치에 관한 주요 결정
 - 5. 갑질 신고내역에 대한 상담, 운영 현황 모니터링
 - 6.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권고
 - 7.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및 조치사항 결정
 - 8. 이해충돌방지법 제2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심의
 - 9. 하도급 관련 불법·불공정거래 감시 및 규제 개선과제 발굴
 - 10. 기타 윤리·청렴 정책 관련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논의
- ⑦ 위원회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안건을 상정한 회의 개최 시 내부위원보다 옴부즈만 인원수가 많도록 운영하여야 하며, 이 경우 간사를 제외한 참석위원 전원이 의결권을 갖는다. 의견 수렴, 자문 등 의사 결정이 불필요한 안건 상정 시는 제외한다. < 신설 2021.12.30 >
- ⑧ 제7항에 따른 의사결정 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 신설 2021.12.30, 개정 2022.12.29, 개정 2024.1.4 >
- 제5조(임기 및 신분보장)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나 임기 만료 이후 옴부즈만은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거나 본조 제2항에 따른 해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 연임된다. < 개정 2021.12.30 > 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
 - 할 수 있다. < 개정 2022.12.29 >
 - 1.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
 - 2.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3. 심신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4. 제13조에 규정된 활동결과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
 - 5. 제14조의 공표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
 - 6. 사회적,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7. 제10조에 규정된 옴부즈만의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
 - 8. 제11조 제2항에 따른 회피 또는 기피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
 - 9.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단일 년도에 개최된 대면 회의 중 50% 미만 대면 참석한 경우

- 제6조(옴부즈만 운영협의회) ① 옴부즈만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운영협의회(이하 "운영협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- 1. 옴부즈만의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청취 및 협조·애로사항의 해소에 관한 사항
 - 2. 옴부즈만 권고사항 등에 대한 사후관리
 - 3.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직원의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 - 4. 기타 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한다.
 - 1. 옴부즈만
 - 2. 윤리경영 소관부서장 및 감사실장
- ③ 대표옴부즈만은 운영협의회 운영을 총괄하며,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겸직금지)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.

- 1. 국회의원 · 지방의회 의원
- 2.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
- 3. 공공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의 임직원

제3장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

제8조(옴부즈만의 직무) ① 옴부즈만의 직무 수행 범위는 다음과 같다. < 신설 2015.8.12., 개정 2021.12.30, 개정 2022.12.29 >

- 1. 공사계약, 인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부패 유발요인 감시·조사·평가
- 2.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
- 3.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
- 4. 옴부즈만이 처리한 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
- 5.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
- 6. 옴부즈만 운영협의회의 참여
- 7. 감사업무 관련 자문, 감사 실시 요구·참여(감사가 요청할 경우에 한함)
- 8. 민원사무의 확인과 처리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
- 9. 부패방지·청렴 및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자문, 의견 제시
- 10. 부패 관련 민원 접수 · 조사 및 이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서 작성
- 11. 제4조에 규정된 위원회 참여 및 기능 수행
- 12. 그 외에 부패방지를 위해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
- ② (삭 제) < 개정 2021.12.30 >
-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.

- < 개정 2021.12.30 >
- 1.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통해 법적 절차가 종결되었거나 진행중인 경우
- 2.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종결되었거나 진행중인 경우
- 3. 대외비에 해당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4. 그 밖에 청렴옴부즈만의 직무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9조(옴부즈만의 권한) ① 옴부즈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. < 신설 2021.12.30, 개정 2022.12.29 >
 - 1. 제8조에 규정된 직무 관련 자료 열람, 제출 요구
 - 2. 공사 제도 · 관행 등에 대한 부패방지를 위한 시정 요구 및 그 조치 결과에 대한 회신 요구
 - 3. 옴부즈만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한 공표(단. 공사의 공식적인 승인이 있어야 함)
 - 4. 부패방지를 위한 부패취약분야 감사 요구
 - 5. 부패 관련 민원 접수 및 조사
 - 6. 그 외 제8조에 규정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
- 제10조(옴부즈만의 책무) ① 옴부즈만의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한 원칙적 책무는 다음과 같다.
 - < 신설 2021.12.30 >
 - 1.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위법·부당이익을 도모하는 등 일체의 부패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 - 2. 혈연·지연·학연·종교 등을 이유로 직무상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3. 직무 수행 관련 해당 기관이나 이해 관계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한다.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신청해야 한다.
 - 4. 직무 수행 관련 활동 경비 외에 부적절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.
 - 5.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, 선물, 향응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 - 6. 전문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의 부패방지 및 청렴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
- 제11조(제척·회피·기피) ① 옴부즈만은 본인, 배우자 또는 직계 존·비속(배우자의 직계 존·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)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. < 개정 2021.12.30 >
 - 1.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현재 있는 경우
 - 2. 해당 사업의 계약업체 혹은 유관기관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
- 3. 해당 사업 또는 분야의 감사·조사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경우 ② 옴부즈만이 특정 직무와 관련하여 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에게 회피 또는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. < 개정 2021.12.30, 개정 2022.12.29 >

제12조(직무수행 방법)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되,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 회의를 통해 수행해야 한다. < 개정 2021.12.30 >

- 1. 직무수행과정에서 부조리 관련사항을 발견하여 사장에게 시정을 권고하는 경우
- 2. 공사의 수행업무에 대한 제도 및 업무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
- ② 옴부즈만이 처리한 업무는 그 문서에 옴부즈만이 처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. < 개정 2021.12.30 >
- ③ 옴부즈만이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한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원본은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 < 개정 2021.12.30>
- ④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준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장은 시정·개선 권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을 통해 해당 옴부즈만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. < 신설 2021.12.30 >
- **제13조(활동결과 제출 등)** 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활동결과를 다음연도 1월 말까지 **감사**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 개정 2015.8.12, 개정 2021.12.30 >

제14조(공표) 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(민원)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·유포할 수 없으며, 제4조에 의한 위원회를 거쳐 활동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 < 개정 2021.12.30, 개정 2022.12.29 >

제15조(경비 등) 옴부즈만 회의, 현장활동, 협의회의 등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을 실비 지급할 수 있다. < 개정 2021.12.30 >

제16조(비밀유지의무) 옴부즈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, 그 임무를 그만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 신설 2015.8.12, 개정 2021.12.30 >

부 칙

이 지침은 2012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5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이 지침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청렴옴부즈만 위촉장

위 촉 장

성 명:

주 소:

위촉기간: 20 년 월 일~20 년 월 일

위 사람을 『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』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합니다.

20 . . .

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(인)

청렴옴부즈만 서약서

서 약 서

성 명:

생년월일:

위촉기간: 20 년 월 일~20 년 월 일

본인은 『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』에 따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제반 의무를 준수하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본 지침 제5조 제2항 및 현행법에 따른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 . . .

서약자 성명 (인)

시정(개선) 권고서

시정(개선) 권고서

20 - 호

권고일자: 20 년 월 일

이행기한 : 20 년 월 일

권 고 인 : 한국가스기술공사 청렴옴부즈만 000 (인)

『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』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시정(개선)을 권고하오니, 상기된 일자까지 조치 결과를 회신(통보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시정(개선) 권고명	
시정(개선) 권고 상세 내용	

조치결과 통보(회신)서

조치결과 통보(회신)서

20 - 호

통보(회신)일자 : 20 년 월 일

『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』제8조, 제12조 및 시정(개선) 권고서 20 - 호에 따라 시정(개선) 권고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음을 통보(회신)합니다.

권고 내 용	(5W1H에 기반)
조치 결과	(5W1H에 기반)
해당 부서	부 서 명 : 담당자명 : 연 락 처 :